

# kiri Weekly

2012.8.6 제194호

## 이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 포커스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8): 보증보험의 개념 및 특성

## 국내금융 뉴스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

산업활동 부진, 전 부문으로 확산

##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연준, 추가 부양책 가능성 시사

유럽 \_ ECB 특단 조치 일부 현실화 가능성 희박

일본 \_ 日, '8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발표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8월 13일은 휴간입니다.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

## 요약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근퇴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6일부터 시행 됨. 특히 이번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음.

첫째,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되도록 규정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하의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연금재원이 조기소진될 수 있음.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중도해지 할 수 있음.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임. 넷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자산규모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섯째,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상환조건,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담보대출이 활용되기 어려움. 여섯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으로 너무 짧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 퇴직금제도 하의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미국처럼 해지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서 담보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규정을 축소하는 반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sup>1)</sup>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sup>2)</sup>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 이에 보고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연속성 강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1) 본래 해외 주요국처럼 개인퇴직계좌였으나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2) ICI(2010. 5), "Research Fundamentals", Vol. 19, No. 3.

##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규정



### 가.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표 1〉 근퇴법 및 근퇴법 시행령상의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조항

근퇴법 개정안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p>제17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p> <p>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p> <p>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p> <p>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38조(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의 처리)</p> <p>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p> <p>법 제17조 제4항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li> <li>2.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li> <li>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li> </ol>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12.7에서 발췌하여 정리.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이전 시 연금제도의 연속성 보장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sup>3)</sup>로 제한하고 있음.

#### 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시에는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또한 퇴직급여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사유<sup>4)</sup>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함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금액(150만 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4) 담보대출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모두에 허용되지만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만 허용됨. 담보대출은 재원자체의 소진가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의 누진효과 상실로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저해함.

- 즉 근로자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되, 횡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퇴직급여가 불합리하게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소정근로시간단축형, 57세 이상 정년 및 재고용형을 중간정산사유로 규정

〈표 2〉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근퇴법 개정안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담보대출)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 ① 법제7조제2항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시 ② 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u>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	제3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만, 해당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함)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제22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u>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u>	제15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u>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수급조건 및 중도인출) 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조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수급조건 및 중도인출) ② 가입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u>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u> 할 수 있다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12.7에서 발췌하여 정리.

### 3.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문제



####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대상 측면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으로 퇴직적립금을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가입자는 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제도 형태(Opt-In)를 띠고 있음.
  -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퇴직급여 지급 시까지 이연시켜 주고 있음.
    - \*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퇴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즉,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 법정퇴직금제도의 연속성은 매우 취약함.

#### ■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시 제재 측면

-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후 자율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중도해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간 또는 퇴직급여제도간의 상호 연속성이 미흡함.
  - 중도해지(조기인출)나 일시금 수령 시에 저율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연금수령의 유인 효과가 매우 낮음.

#### ■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가입 연령 측면

- 현재 기업의 평균 정년이 대체로 55세 수준이며 또한 근퇴법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수급연령도 55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연령을 55세로 설정함.

- 따라서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55세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은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의 일시금 수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정년연장 추이, 기대수명 증대에 따른 장수리스크에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 중간정산 요건 범위 측면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정된 중간정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근로자의 자산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정산 방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 퇴직연금 수급 요건 측면

- 현행 근퇴법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인 반면, 연금지급은 5년 이상으로 매우 단기임.
-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함.

## 4.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소진되어 노후의 소득불안전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sup>5)</sup>
- 둘째, 퇴직금의 연금수령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임의적인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60세 이전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노동부(2010. 12),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방안』에서 재인용.

-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
  - 담보권의 설정, 담보대출의 금리 수준과 관련된 규정 마련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 호주, 홍콩 등 선진국은 담보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연금 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담보대출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담보대출 시 퇴직연금가입자의 자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산정산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하되 연금수령 기간을 더욱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자<sup>6)</sup>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또한 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축소하되,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kiri](#)

6) <http://taxes.about.com/od/retirementtaxes>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도 최근 2년 이내의 무주택자에게는 조기인출을 허용하지만 10만 불 이상의 조기인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출 시에는 10%의 페널티세를 부과함.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조기인출조건과 비교 시 매우 엄격한 수준임.